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33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41	김상훈의원 등 13인	'25.12.26.	'26. 3. 10.
	2215676	이주영의원 등 12인	'25.12.29.	
	2215694	김남희의원 등 11인	'25.12.29.	
	2215851	한지아의의원 등 10인	'26. 1. 5.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3. 1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1호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 ·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u>광고</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략)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 7. (생략)

제27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제11호까지의-----

3. ~ 7. (현행과 같음)